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소 후 효력기간 신설 등〉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04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 안 경 위	1
II . 제 안 이 유 및 주 요 내 용	1
III . 검 토 의 견	3
1. 피고인원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행위의 구속사유 배제	3
2. 기소 후 구속영장의 효력 기간 신설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견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2. 2.
3. 회 부 일: 2024. 12. 3.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 필요성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
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
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피고인의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행위의 구속사유 배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의 구속 여부 판단 시 피고인 등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구속 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4항 신설, 안 제209조).

현행	개정안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③ (생략) <u><신설></u>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제1항의 구속사유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u>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09조(준용규정) ----- <u>제70조제4항, 제71조</u> ----- ----- ----- ----- ----- ----- ----- ----- -----.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¹⁾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구속 여부 판단 시 피고인 등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구속 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임. 이는 피고인 등이 참고인을 접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됨. 또한, 피고인의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를 차단하므로 해석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실현하는 취지가 있음.

다만, 다음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피고인 등의 참고인에 대한 접촉이 실제로 증거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속사유로 평가할 수 없게 되어, 재판에서 실체적

1)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진실 발견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구속 제도의 목적은 피의자·피고인의 형사소송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며,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구속제도의 목적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고인 접촉이 참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사법절차 상 참고인 보호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설에서의 면접 방식과 같이 장소나 시간, 횟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증거인멸 방지와 참고인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기소 후 구속영장의 효력 기간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한 경우 해당 구속영장의 효력을 7일로 제한하여 법원이 자동으로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임(안 제20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第203條(檢事の 拘束期間) (생략) <u><신 설></u>	第203條(檢事の 拘束期間)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한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소한 때로부터 7일이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u>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은 공소 제기 후 무죄판결 선고 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취소 결정 시(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기간 만료 시(형사소송법 제92조) 등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실무상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검사가 구속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7일 이내에 구속 계속 여부를 심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화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이를 통해 법원은 기소 직후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불필요한 구속상태의 지속을 방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재판 시작과정에서 구속 계속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재에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청구,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심사 등 인신구속의 단계와 상태에 따라 다양한 보완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구속취소청구를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와 같은 구속사유의 존속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기존 해당 제도들과의 중복 부분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구속영장의 효력을 공소 제기 후 7일로 한정하여 7일 이내에 구속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므로, 7일 이내에 법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063